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법제 연구*

- 학교경찰(School Police) 제도를 중심으로 -

김 형 섭

법학박사

< 목 차 >

- I. 서론
- II. 학교경찰제도의 의의
- III. 우리나라 학교경찰제도
- IV. 외국의 학교경찰(School Police)제도
- V. 바람직한 학교경찰제 운영 방안
- VI. 결론

I. 서론

학생이 안전한 교육환경 속에서 교육받아야 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함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학교 현장의 현실은 이와 동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2013년 3월 11일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목숨을 끊은 경북 경산의 고교생 A(15)군 사건 이후 유족은 물론 가해자와 가족, 주변 학생들까지 정신적인 상실감에 시달리고 있어 심리 치료 등 다각적인 지원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한다. A군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학생들과 가족들도 자신들의 폭력행위로 엄청난 결과를 몰고 왔다는 죄책감과 사회적 비난을 받아야 하는 심리적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을 것이다.¹⁾

* 투고일 : 2013.5.11, 완료일 : 2013.6.7, 제재확정일 : 2013.6.15

1) 대구매일신문, '경산 학교폭력 '공황상태'…심리 치료 모두 받아야' 2013.3.25일자. 6면.

이렇듯 학교폭력이 심각해질수록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들 수 있고 심할 경우 성장과정에서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인재를 우리 사회에서 영원히 잃어버릴 수도 있고, 사회 전체적으로 피해학생이나 가해학생의 긴 인생에서 볼 때는 결국 모두가 피해자로 남을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학교폭력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연구자가 경찰 실무에서 학교폭력과 부딪혀 본 바로는 현행 법률과 현행 제도로는 학교폭력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여러 한계가 있었다. 또한 정부차원에서 그동안 종합대책을 수차례 내어 놓은 바 있지만 이것도 현실적으로 근본적인 대안(代案)이 되지는 못하였다. 이는 그동안 수차례 정부종합대책 시행 후에도 학교 폭력은 오히려 더 잔인화, 흉포화 되었음이 반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9년 학교시설 개방이후부터 외부인의 침입에 의한 학생 성폭행과 성추행, 폭행, 방화, 도난 등의 범죄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학교 안에서 발생한 절도·성폭행·살인 등 강력 범죄는 1 3,700여건에 달한다고 한다. 이러한 사회적 맥락에서 학교폭력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스쿨폴리스 즉 학교경찰제도가 주목받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 서초경찰서가 관내 14개 학교에 설문조사한 바에 의하면 서초경찰서 관내 13곳에서 스쿨폴리스(School Police·학교 전담 경찰관)를 요청했다는데 이를 학교들은 교내에 기존의 CCTV만으로 부족하며 교내에 경찰관을 위한 사무실도 만들어 경찰관이 상주하면서 학교폭력을 잡아 주었으면 한다는 것이다. 사실 해외에서는 이미 경찰관이 적극적으로 학교 안팎에서 벌어지는 문제에 개입하고 있고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²⁾

이러한 취지에서 본 연구에서는 첫째,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해결책으로서 학교경찰제도의 여러 모델을 구분해서 살펴보고, 둘째, 학교폭력의 현장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나라 경찰의 학교경찰 관련 현행 제도를 고찰한 후 셋째, 선진 외국의 스쿨폴리스(School Police) 제도를 차례로 비교해 본 다음, 마지막으로 여러 고려요소들을 종괄하여 현재 우리나라에 적합한 학교경찰제 방안에 대한 대안을 제시

2) 「서초경찰서가 설문을 돌린 14개 학교 가운데 1개교를 제외하고는 모든 학교가 "학내(學內)에 경찰관 사무실을 마련할 테니, 학교 폭력을 감시해달라"고 답했다고 한다. 경찰관이 학교 내부도 순찰해달라고 요청한 학교는 12개교, 10개교는 교문에 '학교 전담 경찰관 근무학교'라는 명패를 설치해달라고 응답했다는 것이다. 조사를 담당한 서초서 경찰관은 "대부분 학교가 학교운영위원회를 열어 학부모들의 의견을 청취한 뒤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안다"며 "그만큼 학부모들이 학교 안전에 대한 걱정이 크다는 걸 보여주는 결과"라고 말했다.」 (조선일보, "학교에 경찰常駐해서라도 학교 폭력 잡아달라", 2013.3.25일자, A12면)

해 보고자 한다.

II. 학교경찰제도의 의의

1. 학교경찰(School Police)의 개념

학교경찰제도는 각 나라의 문화적 환경과 교육여건, 경찰제도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학교경찰제도의 개념을 일의적으로 규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³⁾ 그만큼 다양한 형태의 학교경찰 즉 스쿨폴리스가 오래전부터 존재해 왔다.

스쿨폴리스(School Police)는 보는 관점에 따라 그 정의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지만 한마디로 학교폭력예방을 위해 경찰관을 학교에 상주시키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스쿨폴리스(School Police)는 갑자기 생겨난 제도라기보다 이미 오래전부터 선진국에서 청소년 비행 및 학교폭력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교육청과 함께 실시해 온 제도라 할 수 있다.⁴⁾

통상 학교경찰 즉 스쿨폴리스(School Police)란 학교폭력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대처,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경찰관 등을 학교에 배치해 학교폭력 등 학교안전과 학생보호를 위한 경찰활동을 전담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고 볼 수 있다.⁵⁾

우리나라의 경우 실무상 ‘학교경찰’과 영어로 ‘스쿨폴리스(School Police)’라는 용어가 서로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 혼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는 스쿨폴리스(School Police)의 경우 경찰관이나 안전요원이 경찰관서가 아닌 일선 학교나 교육청 등에 상주하면서 오로지 학교관련 업무에만 전종하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⁶⁾

어쨌든 ‘스쿨폴리스’란 청소년 비행에 대해 경찰청과 교육청중심의 예방적 차원에서 실행되는 네트워크적 대처방법의 하나로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⁷⁾

3) 김순석, ‘한국의 학교경찰제 도입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4, 6면.

4) 신순갑, ‘학교폭력과 스쿨폴리스(School Police)’ 오늘의 청소년, 제23권 제2호 통권 217 호,(2007년 3/4월),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2007.3. 19면.

5) 최종술, ‘학교경찰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정부학회 2012 추계학술대회, 2012, 4면.

6) 이에 반해 실무상 학교경찰(특히 학교전담경찰관)이란 현직 경찰관이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 근무지를 두고 관내 학교를 돌면서 학교폭력 등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7) 신순갑, 위의 논문, 19면.

2. 학교경찰의 여러 모형

일반경찰처럼 학교경찰의 유형도 각 나라마다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미국은 같은 연방국가는 각 주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학교폭력에 대응하기 위해 청소년 선도차원에서 학교경찰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미국과 같이 총기소지가 허용되는 국가에서는 학교폭력을 일종의 범죄로 간주하고 범죄진압적 차원에서 학교경찰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도 있다.⁸⁾ 학교경찰제도의 여러 모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구분될 수 있다.

1) 교내상근경찰(School Resource Officer) 모형

이 제도는 미국 미시간 주(州)의 Flint에서 1950년대에 시작되어 1970년대와 1990년대에 널리 퍼졌다. 캐나다의 경우 꽤 많은 주요 대도시에서 학교폭력예방책으로 교내상근경찰관(School Resource Officer : SRO)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1979년 앨버타 주(州) 에드먼튼에 처음 소개되어 현재 캘거리, 오타와, 위니펙 등에서 시행되고 있다.⁹⁾

즉 학교에 현직 경찰이 상주하는 모형으로 미국, 캐나다, 호주 등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학교연계경찰(School Liaison Officer : SLO)이라고 한다.¹⁰⁾

Liaison이란 연계, 연락의 의미를 갖고 있고 이는 학교와 경찰간의 밀접한 관계를 유지한다는 의미이다. 학교와 경찰이 학교폭력 등 범죄예방이라는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군대 연락장교와 유사하게 연계경찰관을 학교에 파견하거나 상주시킨다. 이러한 제도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인력이나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기에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미국의 경우, 학교와 경찰간의 상호협약(Agreement)이나 우호정신(Goodwill)에 입각해서 시행하고 있다.¹¹⁾

8) 경기경찰청 여성청소년계, 한국형 학교경찰제 도입을 위한 방안, 2011, 27면.

9) 캐나다는 교육체계와 행정이 연방이 아닌 주 차별로 결정되는 지라 명칭과 파견인원 및 조건이 조금씩 다르다. 모든 학교에 경찰이 배치되는 것은 아니며 개별학교의 신청에 따라 해당교육청과 경찰 당국이 그 필요성을 검토하여 SRO를 파견한다. 전문직업인으로서 교내 상근경찰관이 학교와 지역사회의 안전 및 바람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지켜야 할 규칙은 양측이 맺은 협약으로 정해진다. (정문숙, '학교-경찰의 안전협약과 교내 상근 경찰', 외국교육동향, 한국교육개발원, 2012. 26면)

10) 경기경찰청 여성청소년계, 위 연구, 27면.

11) 최종술, 앞의 논문(한국지방정부학회), 2012, 7면.

2) 학교경찰기구 모형

일정한 지역에서 학교만을 관할하는 별개의 학교경찰관서를 설치하는 형태이다. 학교경찰만을 전담하는 기구나 조직을 설치, 운영하는 바, 독립성과 전문성을 가진 학교경찰 전담기구에서 학교경찰 사무를 수행한다. 대표적인 경우가 로스엔젤레스 학교경찰국(LASPD : Los Angels School Police Department))이 있다.¹²⁾

독립적인 학교경찰 전담기구를 따로 설치하는 형태로 학교폭력의 예방과 진압 관점에서 보면 가장 진일보한 형태로 보인다.

3) 학교안전지킴이 모형

이 모형은 퇴직경찰관이나 퇴직교사 등으로 선발된 안전요원 일명 지킴이를 교내에 두고 경찰관서와 연계하여 학교내의 학생보호와 질서유지 등 상호 협력적으로 경찰활동을 수행하는 방식이다. 평상시에는 학교안전요원에 의한 학교안전활동이 이루어지다가, 폭력 등 범죄행위가 발생하면 안전지킴이 등 학교측의 요청에 의해 경찰이 학내에 진입하여 경찰활동을 수행하는 방식이다.¹³⁾

우리나라의 배움터 지킴이나 아동안전지킴이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4) 민간경비 활용 모형

학교가 민간경비업체와 협정을 체결하여 민간경비원을 학교에 상주시켜 학교폭력을 예방하거나 감시하는 유형으로 중국의 북경과 미국 워싱턴 시(市)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¹⁴⁾

독일 노이쾰른구에서도 2007년부터 관내 13개 시범학교를 대상으로 민간경비용역 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후 학교당 1~2명의 경비원을 두어 외부인의 학교출입을 통제하고 학생증과 가방검사를 실시하는 등 '학교경비용역제'를 시행하였다. 이 민간경비원들은 근무시간동안 휴대전화는 소지하되 무기는 소지할 수 없으며 외부인 침입에 의한 범죄가 발생하면 즉시 경찰에 알리는 업무를 수행하였다.¹⁵⁾

12) 최종술, '미국의 학교-경찰 연계제도 및 한국의 학교폭력 해결책에 주는 시사점', 한국교육개발원, 2012.6, 3면.

13) 최종술, 앞의 논문(한국지방정부학회), 2012, 7면.

14) 김남호, '한국형 학교경찰제도에 관한 연구', 한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1, 25면.

15) 이덕난·한지호, '독일의 학교경찰제 도입 사례 및 시사점', 이슈와 논점 제114호, 국회입법

장기적으로는 부족한 경찰력 등 국가 공(公)경비의 부족을 해결하고, 학교 및 학교주변의 범죄예방을 위한 학교와 경찰, 민간경비의 협력을 통한 새로운 학교범죄의 예방적 모델을 학교경찰제도의 대안으로 모색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¹⁶⁾

III. 우리나라의 학교경찰 제도

1. 학교전담경찰관

우리나라 경찰의 ‘학교전담경찰관’ 제도는 현직 경찰이 담당구역을 정하여 구역내에 있는 학교를 전담하여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주요 임무는 학교폭력사건의 발생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위원으로 개별사안의 심의에 참석하여 객관적 심의를 하고, 학교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학교폭력 피해를 예방하고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학교 밖의 비행청소년 문제 및 각종 학교폭력 관련 첨보도 수집하는 등 종합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즉 현직경찰관이 ‘학교폭력’ 업무에만 전종하는 것이다.¹⁷⁾

경찰은 현재 전국 11,384개 학교에 경찰관 681명을 학교전담경찰관으로 배치하여 1인당 16.7개 학교를 담당토록 하여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¹⁸⁾

경찰이 ‘학교전담경찰관’이라는 명칭으로 일선 경찰서의 경찰관을 여성청소년과에 배치, 활용하게 된 배경은 최근 청소년범죄가 흉포화, 저연령화 되면서 사회문제화되고 있어 학교폭력이 발생하였을 때 경찰과 학교간에 원활한 협조체계 구축이 필요하였다. 또한 전국 경찰서별로 범죄예방교육 강사가 지정 되어 있었으나 자신의 본래 업무 외에 부가되는 학교 출강에 대한 기피현상과 전문성 없는 경찰관 강사가 실제 범죄예방교육을 하였을 때 오히려 교육 효과가 저하되는 등 여러 요인이 작용하였다. 그 구체적인 역할은 경찰관이 관내 각급 학교를 방문하여 전문적인 ‘범죄예방교육’을 전담한다. 또한 학교폭력 발생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실질적으로

조사처, 2009.9.10, 1~2면.

16) 최종술, 앞의 논문(한국지방정부학회), 2012, 8면

17) 김형섭,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법제연구 – 경찰의 대응방안과 헌법정책을 중심으로 –’, 영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3, 108면.

18) 경찰청·교육부 자료 (조선일보, “학교에 경찰 常駐해서라도 학교 폭력 잡아달라”, 2013.3.25 일자, A12면)

참여, 형사사건절차 및 법률관련 자문 역할도 맡고 있으며 자치위원회에서 선도교육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에 대해 법질서교육, 경찰관서 견학, 상담 등과 같은 특별 선도교육도 실시한다. 더불어 경찰과 교육청간의 연결고리 역할도 하면서 학교폭력에 공동대응을 강화해 나가는 등 다양하고 실질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것이다. 근무시 복장은 사복 원칙으로 범죄예방교육 등 필요시에는 근무복이나 정복을 착용한다.¹⁹⁾

2. 학교담당경찰관

이 제도는 경찰서 소속의 경찰관이 자신의 고유 업무를 수행하면서 별도로 학교 경찰 업무도 수행하는 형태를 말한다. 따라서 학교경찰로서의 전문성이 부족하며 자신의 본래 업무 외에 부가되는 학교경찰 업무를 수행하는 점에서 활동의 효과가 뒤떨어지는 것이 단점이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파출소 외근 경찰관이나 경찰서의 형사들에게 관내의 담당 학교를 지정해 준 후 정기적으로 학교를 방문, 학교폭력의 실태를 파악하고 가해·피해 학생의 면담 등 선도활동을 수행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하는 것이다. 통상 1인이 1개의 학교를 지정받아 주 1회 정도 학교를 방문하는 방식이다.

경찰청에서는 앞서 살펴본 학교전담경찰관 제도의 확대 시행에 맞추어 현재 이러한 담당경찰관제는 실무상 운용하지 않고 있다. 다만 파출소장의 경우 관할내의 학교에서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도록 해 놓고 있다.

3. 아동안전지킴이

경찰에서는 아동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대한경우회²⁰⁾·노인회 회원중 다수를 선발하여 '아동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다. 2008년 전국 11개 경찰서에서 시범운영을 거친 후 그 효과가 인정되어 2009년 3월 2일부터 전국 대도시 101개 경찰서로 확대하였고, 2010년에는 전국 174개 경찰서로 그 운영이 증가되었다. 경찰은 아동안전지킴이들에게 위급사항 발생시 조치요령을 교육하는 등 명확한 임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지킴이는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등·하교 시간에 학교 주변·놀이터 등을 순찰하고 신고 접수된 사건에 출동하는 등 부족한 경찰력을 보

19) 김형섭, 앞의 논문, 109면.

20) 퇴직경찰관들의 대민봉사 친목단체를 말한다.

완하고 있다.²¹⁾

그 운영은 과출소장이 배치된 아동안전지킴이에 대해 놀이터, 학교주변 순찰 등 일일 근무를 지정하고 출·퇴근 감독을 하도록 하고 있다. 2011년에는 전국 248개 경찰서 2,270명으로 확대하고, 우수 시책 공모 등을 통해 운영을 내실화 하고 있다.²²⁾

이렇듯 아동안전 지킴이는 주로 학교‘주변’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비해 아래에서 살펴 볼 배움터 지킴이는 학교‘내’에 상주한다는데 그 차이가 있다. 즉 ‘아동안전지킴이’의 경우 활동장소가 주로 등·하굣길 학교 주변으로 교육청 관할인 학교내에서 활동하는 배움터지킴이와 구분된다.

아동안전지킴이는 운영에 있어 보건복지부(예산)·경우회(인력풀)·경찰(관리)이 공동으로 하고 있어 그 관리 주체가 모호한 면이 있다. 또한 인력이 주로 경우회·노인회 소속 퇴직경찰 및 노인으로 충원되는 현실로 날로 흡포화 되어 가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해 효율적으로 지도·훈계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무엇보다 활동비가 월 30만원으로 적어 주로 노년층에서 지원하여 활동하고 있는 실정이다.²³⁾

4. 배움터지킴이

경찰은 2005년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퇴직 경찰과 교사들을 학교내에 상주시키는 ‘배움터 지킴이’ 제도를 실시하였다. ‘배움터지킴이’란 학교폭력 등 각종 비행행위를 학교현장에서 예방, 제지하여 집단따돌림 및 불량서클 결성 등이 상습화되는 것을

21) 경찰청, 경찰백서, 2011, 107면.

<표 1> 아동안전 지킴이 운영성과('08.5.2~'10.12.31)

범인예방·보호 실적									
개		폭력 예방		설종 예방		비행 선도		기타 사범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21,138	47,427	1,912	4,353	575	643	7,930	16,600	10,721	25,831
범인 검거·지원활동 실적									
소계		성폭력범		강·절도범		폭력사범		기타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15	27	3	3	2	2	4	13	6	9

출처 : 경찰청, 경찰백서, 2011, 107면.

22) 경찰청, 앞의 백서, 2011, 109면.

23) 김형섭, 앞의 논문, 179면.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가해학생을 선도하는 사람을 말한다.²⁴⁾

이 제도는 우리나라보다 먼저 학교폭력문제로 몸살을 앓아 왔던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 학교폭력을 예방·제지하기 위해 전·현직 경찰관을 학교에 상주시키는 '유스페트롤', '스쿨캅' 등의 제도를 모방하여 2005년에 부산에서 시범운영한 '스쿨폴리스' 제도를 명칭 변경하여 확대 시행한 것이다.²⁵⁾

구체적으로 이 제도는 부산지방경찰청과 부산광역시교육청 공동으로 2005년 5월 2일부터 같은 해 7월 16일까지 부산지역 7개교(초등1, 중등3, 고등3 총 14명)에 '스쿨폴리스'라는 명칭으로 시범 운영하였다. 이어서 본 프로그램이 '2005년 정부혁신 우수 사례'로서 대통령 표창을 받으면서 같은 해 11월 '배움터지킴이'라는 명칭 변경과 함께 경찰청 주관으로 전국 71개교 총 142명으로 운영되었다. 2006년에는 주관 부서가 경찰청에서 교육부로 변경되었으며 2008년 9월에는 1,626개교(초등 585, 중등 783, 고등 258) 1,643명(퇴직경찰 929명, 퇴직교원 400명, 청소년전문가 등 314명)으로 확대되었다. 현재 각 지역별 배움터지킴이와 자치단체 운영 각종 지킴이는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²⁶⁾

배움터지킴이는 주로 전직 경찰관 및 퇴직교원 등으로 구성되어 해당 학교에 상주하며 등·하교 취약지역 및 쉬는 시간 학교내 순찰, 학교 위험지역 파악 및지도·단속, 학교주변 환경정비, 학교폭력 관련 학생 상담 및 학교폭력 사고처리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월 활동비는 60만원 정도이다.²⁷⁾

교육부에서 실시한 2006년 12월 외부용역평가에 따르면, 운영학교의 교사와 학생의 76.7%와 29.8%가 배움터지킴이 프로그램이 효과적이라고 평가했으며, 2007년

24) 경찰청, '배움터 지킴이 업무메뉴얼', 2005, 6면

25) 정성덕, "학교폭력실태와 경찰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9, 58면.

26)

<표 2> 배움터지킴이 운영현황 ('10년 10월 기준) (단위 : 명)

년도	계	서울	인천	대전	대구	광주	부산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경북	전북	전남	경남	제주
'09	2,778	1,220	120	146	120	30	117	30	50	20	83	307	82	110	35	240	83
'10	미 집 계	미 집 계	200	480	364	376	438	113	미 집 계	미 집 계	333	530	499	210	미 집 계	미 집 계	미 집 계
증감	•	•	+ 80	+ 334	+ 244	+ 346	+ 321	+ 83	•	•	+ 250	+ 223	+ 417	+ 100	•	•	•

출처 : <http://cafe.daum.net/jikimi2008>, '배움터 지킴이 인터넷 카페', 배움터 지킴이 연혁, 2013. 6. 4. 검색.

27) 김형섭, 앞의 논문, 126면.

‘학교폭력 자진신고기간’ 중에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피해학생 2,816명 중 75%가 배움터지킴이 프로그램의 전국 확대를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²⁸⁾

‘배움터지킴이’ 제도는 학교폭력의 근절과 예방을 위해 현재 학교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이지만 2006년 이후 주관부서가 경찰청에서 교육부로 바뀌면서 경찰과의 유기적인 협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왜냐하면 관리주체가 학교장이고 주로 학교내에서 활동하므로 경찰과의 직접적인 연계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활동비도 월 60만원으로 적어 주로 노년층에서 지원하여 활동하고 있고 학생지도시 구체적 권한이 없다보니 선생님과의 마찰, 학생들과의 마찰이 발생되고 있다. 즉 문제학생 지도시 욕설을 듣거나 대드는 경우 속수무책이다.²⁹⁾

서울시의 ‘학교보안관’³⁰⁾이나 교육청의 ‘배움터지킴이’ 제도는 교사 부재시에 발생할 수 있는 학교폭력이나 각종 사고를 예방, 감시할 수 있다는데 확실히 존재가치가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대개 혼자서 근무하기에 담당범위가 너무 넓고 긴급 상황 발생시 대처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경찰에서 처음 ‘배움터지킴이’ 제도를 시범 운영하였던 2005년에는 경찰의 순찰개념과 같이 2인 1조 근무로 편성하여 1인은 응급조치, 1인은 신고 및 상황전파 등을 담당하여 효율성이 더 높았다고 생각된다. 또한 아동안전 및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여러 자치단체에서 다양한 명칭으로 순찰인력을 편성하고 있고 각종 봉사단체에서 순찰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나, 다양한 명칭의 자치단체 ‘지킴이’들로 인해 시민과 학생들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고 순찰시간도 일관성이 없어서 나름대로 정리가 필요하다. 경찰에서 학생보호단체간 순찰시간과 장소를 조정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 지방자치단체와 경찰, 교육청, 시민단체들이 각종 지킴이 제도를 추진하기에 앞서 서로의 활동내용에 대해 사전에 조율하여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³¹⁾

IV. 외국의 학교경찰(School Police)제도

스쿨폴리스(School Police)는 미국의 경우 1964년에 로스엔젤레스에서 시작하였고

28) 정성덕, 앞의 논문, 59면.

29) 박윤기, “학교폭력에 대한 경찰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164면.

30)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초등학교 지킴이 제도이다.

31) 김학수,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를 위한 경찰청과 민간의 네트워크 방안’, 학교폭력 연구 제1권 제1호, 2011, 57면.

영국의 경우는 1974년 런던에서부터 시작하였다. 캐나다는 이보다 더욱 앞선 1957년부터 토론토에서 시작하였다. 이렇듯 이 제도에 대한 도입의 역사는 이미 50여년이 지난 검증된 제도라 할 수 있다.³²⁾

사실 학교폭력은 우리보다 선진국에서 오랜전부터 몸살을 앓아 온 공통의 과제라 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학교폭력이 심각한 미국, 유럽의 독일과 영국, 호주 등 4개국의 스쿨폴리스 제도에 대해 살펴 본다.

1. 미국의 LA 학교경찰(LA School Police Department)

최근 미국에서는 학교폭력의 개념을 테러 등을 포함한 학교안전이라는 넓은 개념에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한다. 학교폭력에 대하여 경찰이 직접 개입하는 대신 학교경찰이 직접 학교내에서 폭력범죄를 예방·처리하고 있다. 그중 LA 학교경찰은 앞서 살펴본 학교경찰의 여러 모형중 학교경찰기구 모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미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학교경찰로서 'LASPD(Los Angels School Police Department)'라고 불린다. 1948년에 도입, 60여년의 전통으로 약 350여명의 현직 경찰관들과 126명의 학교안전요원, 사무지원 요원 34명이 약 61만여명의 학생과 1,250여개의 학교를 대상으로 1인당 2.2개교를 담당하고 있다. Los Angeles에서는 다섯 번째로 큰 경찰부서이고 California주(州)에서는 열네번째 규모인 것이다. LA 학교경찰은 시(市)경찰(Metropolitan Police Departrnent)과 별개의 부서이고 사법권을 가지고 있다.³³⁾

24시간 3교대로 학교에 상주하며 학생 안전을 전담하고 있다. 학교 폭력뿐 아니라 시험 부정과 학교 비리 등의 범죄도 감시한다. 연간 예산은 5,200만달러(약 580억원)라고 한다.³⁴⁾

LASPD는 캠퍼스경찰관(Campus Police Officer), 순찰경찰관(Patrol Police Officer), 현장교육경찰관(Field Training Police Officer), 경찰견(Canine, K-9)팀, 수사관(Detective), 교통경찰(Traffic Enforcement), 특수기동대(Special Response Team : SRT) 등 7개 부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찰학교를 졸업하고 캘리포니아 경찰훈련과 법규에 의해 권위와 특권이 부여된 정규경찰이며 다른 주요 대도시의 경찰과 달리 청소년 관련법과 관련된 쟁점사안에 대한 추가훈련을 받도록 하고 있다.³⁵⁾

32) 신순갑, 앞의 논문, 19면.

33) <http://www.lasd.com/>, 2013.6.4. 검색.

34) 조선일보, "학교에 경찰常駐해서라도 학교 폭력 잡아달라", 2013.3.25일자. A12면.

35) 최종술, 앞의 논문(한국교육개발원), 2012.6. 23~33면.

LA 학교경찰의 특징은 학교폭력 및 청소년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대규모의 독립된 경찰부서이고, 사법권을 가지고 있으며, 경찰을 중심으로 민간스텝을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³⁶⁾

2. 독일의 학교경찰배치제

독일에서는 그동안 청소년 범죄가 꾸준히 증가하여 그 실질적 대책을 요구하는 여론이 높았다. 소개할 ‘학교경찰배치제’는 학교안전확보를 목적으로 학교에 경찰관을 배치하는 방안이며 함부르크시가 도입한 ‘Cop4U’ 프로그램이 대표적이다. 2002년 처음 도입되었고, 2007년에는 ‘청소년범죄대처방안’의 10대 전략개념의 하나로 ‘Cop4U’프로그램을 선정·강화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2003년 10월 교육청과 직업·평생교육청, 함부르크 경찰청간에 체결된 기본합의서에 따라 2003년 12월, 235명의 경찰관을 학교에 배치하였고 이후 2010년 5월 기준으로 237명의 경찰관을 총 497개 교에 배치하였다. 학교에 배치되는 경찰은 고졸 이상으로 업무 수행전에 주(州)경찰학교에서 이를간의 특별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해당 교육과정은 주(州)정부의 교원양성·교원개발연구소 산하 폭력방지상담소와 경찰청이 협력하여 시행한다. 학교배치경찰의 역할은 첫째, 학교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해 경찰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학생·교사 및 학부모에게 알리고 상담도 실시하며 학부모의 밤 행사, 교사·학부모협의회에도 참여한다. 둘째, 학교주변 및 등·하굣길의 순찰을 돌며 전일제 학교에서는 오후에도 교내에 상주한다. 셋째,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협의회에 참여하도록 한다. 이러한 ‘Cop4U’프로그램의 성과로는 학교와 경찰간의 긴밀한 협력체계가 범죄 해결을 돋고, 위기상황에 공동으로 대처하여 범죄를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도왔다. 그리고 예고된 범죄에 대해서도 학교경찰이 학생중 및 소지품 검사 등을 통해 즉시 대응하여 효과적으로 예방 및 대처하였다. 이러한 ‘Cop4U’프로그램은 독일 내 다른 주(州)정부뿐만 아니라, 이탈리아와 프랑스 등 유럽 주요국에서도 성공사례로 관심을 받고 있다.³⁷⁾

3. 영국의 학교전담경찰관

영국의 최근의 한 여론조사에선 약 절반의 학생이 다른 학생으로부터 언어적·육

36) 오정훈,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경찰활동 방안”, 충남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44면.

37) 이덕난·한지호, 앞의 논문, 3~4면.

체적 괴롭힘을 겪은 적이 있다고 대답했고, '현재 자신을 괴롭히는 학생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8%였다고 한다. 서유럽 국가 중 가장 높은 비율이었다.³⁸⁾

영국은 런던(City of London)에서 1974년 학교경찰이 처음으로 도입된 이래 점차 확대되어 각 시와 주에서 학교경찰이 운영되고 있다. 그 역할은 학생들에 대한 범죄예방교육과 상담이 주 임무이며 예산은 경찰 자체 예산으로 충당되고 있다. 정복은 착용하지만 총기는 휴대하지 않는다. 학교경찰에 대한 법적 근거는 학교와 경찰 간의 상호협약에 의하고 있다.³⁹⁾

영국 전역에는 1,000여 명의 학교전담 경찰관이 있다고 한다. 이들은 오전에는 지역 치안 관련 일을 하고 오후에는 학교 순찰을 돈다. 전담경찰관은 학생들에게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와 e-메일 주소까지 공개한다. 영국 전체 초·중등학교 4분의 1에 해당하는 5,000여개교에 전담 경찰관이 있다. 한 경찰관이 많게는 10개 정도의 학교를 동시에 맡는다. 통상 그중 한 학교에 경찰관을 위한 사무실이 만들어진다. 영국에서 이러한 전담 경찰관을 두는 학교는 꾸준히 늘고 있다. 또한 영국 학교에는 폐쇄회로TV (CCTV) 카메라가 많다. 영국정부 통계에 따르면 한 학교당 평균 20개나 된다. 대개는 교문·현관 등의 방범용이지만 학교 건물 뒤편이나 운동장 구석 등 후미진 곳에 달아 놓은 학교도 흔하다. 이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이다.⁴⁰⁾

4. 호주의 청소년연계경찰(Youth Liaison Officer : YLO)

호주의 뉴사우스 웨일즈 주(州)경찰(New South Wales Police Force)이 실시하고 있는 청소년 연계경찰은(Youth Liaison Officer : YLO) 1988년에 처음으로 시작하였다. 현직경찰관을 중심으로 경찰서에서 주로 근무를 하면서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필요시에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범죄수칙 등을 강의하며 주(州) 관내 200만에 달하는 25세 이하 청소년을 대상으로 경찰활동을 하고 있다. 이들은 학교에 상주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권역 경찰관이 학교경찰 업무를 담당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⁴¹⁾

2007년 뉴사우스 웨일즈 주(州)경찰청은 범죄발생 또는 학교측 요청시에만 담당 경찰관을 지원해온 기존 학교경찰연락관(School Liaison Police)제도가 수동적으로

38) 중앙일보, '현금 안 받는 매점, 뻥 뜯기 원천 봉쇄-영국의 학교폭력방지시스템'.
(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 2012.9.14. 검색

39) 최종술, 앞의 논문(한국지방정부학회), 2012, 13면.

40) 중앙일보, 앞의 검색.

41) 뉴사우스 웨일즈 청소년연계경찰 홈페이지, 2013.6.7. 검색
(http://www.police.nsw.gov.au/__data/assets/pdf_file/0007/113839/youth_liaison_officers.pdf).

운영되어 왔다고 자체 분석하였다. 이에 따라 적극적인 운영방안의 일환으로 청소년 범죄·심리과정 등의 교육을 이수한 경찰관 40명을 선발하여 주(州)내 모든 중·고등학교를 연 1회 이상 방문하여 일과시간동안 학교에 머물면서 청소년 범죄 및 비행예방교육을 진행하며 피해학생 지원 등 업무를 전담하도록 개선하였는데 연락관 1인당 20~30여개의 학교를 담당하도록 하였다.⁴²⁾

V. 바람직한 학교경찰제 운영 방안

우리나라의 학교경찰(School Police)제도와 관련하여 학부모들은 학교에서 경찰들이 정복을 입고 순찰을 도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클 것이라는 반응이다. CCTV로는 은밀히 이뤄지는 학교 폭력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문제는 부족한 인력과 예산이다. 경찰청과 교육청은 앞서 살펴본 '학교전담경찰관' 즉 스쿨폴리스가 담당 학교를 주 2회, 2시간씩 방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고 한다.⁴³⁾ 상주가 아니라 순회 방문 형식인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 살펴본 여러 학교경찰제도를 종합하여 현재 우리나라에 적합한 학교경찰의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관련 법령의 제정

우선 시급한 것이 근거 법령의 제정이다. 현재로는 스쿨폴리스 도입이나 운영에 관한 법률상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학교경찰의 실질적 운영을 위한 법제화 방안은 다음과 같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학교경찰에 관련된 단일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인데 이는 학교경찰의 임무, 조직, 활동범위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어서 법체계의 구성이 빈약하고 간단한 내용이어서 한계가 있다고 보여진다.⁴⁴⁾

42) 경찰청, '豪 NSW州 경찰, 「학교경찰연락관」 제도 개선', 2007.

43) 「경찰 관계자는 "스쿨폴리스 1인당 2개교 정도를 맡아서 순찰 등 다양한 업무를 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현재의 인력으로는 요원한 상황"이라며 "1인당 담당 학교를 10개 정도로 낚추는 데에도 연간 115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 측은 "스쿨폴리스의 필요성에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된 다음, 전문 인력을 늘리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일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조선일보, "학교에 경찰 常駐해서라도 학교 폭력 잡아달라", 2013.3.25일자, A12면)

44) 김남호, 앞의 논문, 64면

즉 단독 법령으로 제정하여 학교와 연계할 수 있는 학교경찰의 조직, 임무, 권한, 책임, 보수 등에 관한 일률적으로 규정하는 방안은 학교경찰제도의 시범실시 등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⁴⁵⁾

둘째, 기초자치단체가 조례상에 학교경찰의 조직, 임무, 선발 및 교육훈련 활동 범위 등을 규정하는 방안이다. 학교폭력 예방은 중앙정부 차원보다는 지역사회 차원에서 지역특성에 맞는 관련기관이 참여할 수 있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어서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⁴⁶⁾

하지만 통제불능의 학교폭력에 대한 해결책으로 떠오른 학교경찰제도에 대해 그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에 있어 강제력과 실효성에서 미흡하다고 보여지는 자치단체 조례로 규정하기에는 이른 감이 있고, 더구나 구체적인 학교경찰제도의 모형에 따라 근거법령의 형식도 맞추어야 하기에 이는 차선책으로 보인다.

셋째, 학교폭력 관련법을 개정하는 방안이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2013.3.23, 법률 제11,690호)」 및 동법 시행령'(2013.3.23, 대통령령 제24,423호)은 사회문제로 대두된 학교폭력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전담기구의 설치, 정기적인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학교폭력 피해자의 보호와 가해자에 대한 선도·교육 등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을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는 법률이다. 이 법률은 학교폭력예방과 학교 내·외의 환경을 개선하여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영유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 따라서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이하 학교폭력대책법)」을 개정, 보완하여 학교경찰제도에 관한 명확한 근거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학교폭력대책법」 상에 스쿨폴리스에 관한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이를 근거로 하위법령에서 보다 자세히 규정하는 방식으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방안은 현재 가장 현실적인 입법방법론으로 보여진다. 구체적으로 현행 「학교폭력대책법」 및 동법 시행령을 어떻게 개정할 것인지 방안을 제시해 보면, 먼저 「학교폭력 대책법」(제14조) 전문상담교사의 배치 조항을 수정·보완하여 「학교경찰의 설치」 조항을 삽입할 수 있을 것이다.⁴⁷⁾

2. 학교경찰 관련 조직의 확대개편

현재 학교폭력 문제는 경찰청 생활안전국의 여성청소년과 청소년계에서 담당하고

45) 최종술, 앞의 논문, 2005, 36면.

46) 김남호, 앞의 논문, 64면.

47) 최종술, 앞의 논문, 2005, 38면.

있다. 하지만 학교폭력문제가 갈수가 심각해지고 있는 오늘날의 실정을 고려해 본다면, 지금의 위 여성청소년과 조직으로는 학교폭력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 왜냐하면 학교폭력문제는 전국적으로 매일 많은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지만 과거 교육부의 소관이고 청소년들만의 문제로 인식하여 설치, 운영해온 현 인력과 조직으로는 학교폭력 문제에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없기 때문이다.⁴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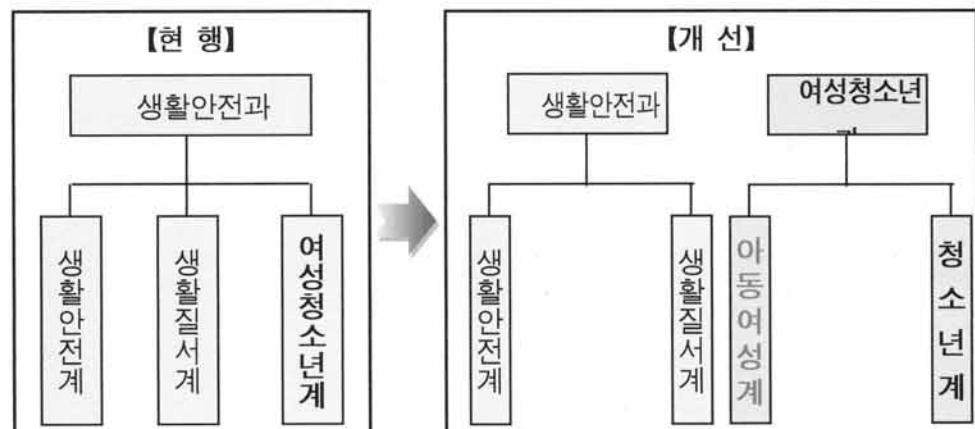
따라서 경찰청에서는 본청의 현 여성청소년과(課)를 여성청소년국(局)으로 확대 개편하고 산하에 학교경찰 관련 계(係)를 신설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학교폭력문제에 대응하여야 한다. 이렇듯 여성청소년국(局)내에 ‘학교경찰계’를 신설하여 학교경찰에 투입되는 연구 인력과 예산을 배가시켜 나갈 때 학교폭력에 대한 근본적인 사회안전망이 형성되리라 생각한다.

물론 2012년 9월 18일 정부의 국무회의에서는 경찰관 1천 37명을 증원하고 성폭력 우범자가 많은 지역을 담당하는 전국 101개 경찰서에 전담과(課)인 ‘여성청소년과’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경찰청 자체 개정안이 의결되었다.⁴⁹⁾ 이러한 조치는 여성·아동 안전에 관한 전담부서를 전국 대도시 경찰서에 2012년 내로 신설함으로써 우범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성폭력·학교폭력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라고 한다.⁵⁰⁾

아쉬운 것은 증원의 초점이 성폭력에 맞추어져 있다는 점이다. 학교전담경찰관의 증원은 193명으로 전국의 경찰관서와 수많은 학교 수를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한 숫

48) 정성덕, 앞의 논문, 77면.

49) 경찰청, ‘여성청소년 기능 조직개편 및 인력 증원 계획’, 경찰청 여성청소년과, 2012.10. 1면.
 〈그림 1〉 2012년 전국 1급지 경찰서 조직 개편안



50) 경찰에서는 2012.11.20. 전국 1급지 101개 경찰서의 ‘여성청소년과’ 발대식을 개최하고 업무를 개시하였다.

자이다. 또 하나는 경찰서 단위의 과(課) 신설은 이루어 졌지만 경찰청 단위의 국(局)으로의 확대개편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는 사실이다. 이는 하부가 크고 상부가 허약한 비정상적 구조로 향후 모든 지방경찰청에 '여성청소년과' 조직을 신설하는 등 정상적인 개편이 뒤따라야 한다. 51)

3. 학교전담경찰관의 증원

현재의 학교폭력으로 인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경찰에서 시행중인 학교폭력 '전담'경찰관의 확대 배치가 필요하다. 경찰에서는 최근 학교폭력 전문경찰관을 현장에 파견하여 학생대상으로 범죄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해 전국 경찰서 청소년계에 학교폭력 '전담'경찰관을 배치하였다. 이는 그동안 형식적으로 이뤄지던 학교 '담당'경찰관제에서 진일보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인다. 52)

현재 전국의 학교 수는 11,000여개이다. 경찰청에서 최근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학교폭력 전담경찰관이 증원 배치되어 1인당 20개교 정도를 담당하게 되었다 53)고 하였다. 그렇다면 학교전담경찰관 1인이 관내 20개의 학교를 하루에 1개 이상씩 순회한다 해도 약 한달이 소요될 것이며 이러한 현실로는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힘들다. 이는 학교전담경찰관 한사람이 관리할 수 있는 학교의 범위를 넘어서 실질적인 '스쿨폴리스(School Police)' 역할을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학교전담경찰관'의 대폭 증원을 통한 추가 배치를 통해 범죄예방교육, 학교폭력 피해사례 접수, 경찰과 학교간 가교역할 수행 등 학교폭력 업무에만 전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최근 학교전담경찰관이 증원된 서울에서는 학교폭력의 개선효과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54) 미국의 경우는 경찰 1인이 3개의 학교를 담당하고 있어 어느 정도 효과를 올리고 있음을 고려할 때 향후 학교폭력 전담경찰관을 대폭 증원하여 학교와 함께 유기적인 협력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범정부적인 의지가 필요하다. 즉 학교폭력 업무에만 전종하는 실질적 의미의 '스쿨폴리스'의 획기적 증원

51) 김형섭, 앞의 논문, 224~225면.

52) 김형섭, 앞의 논문, 225면.

53) 조인식, '학교폭력 근절 대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가해학생 선도 및 조치를 중심으로', 국회입법조사처, 2012.11.1. 13면.

54) 연합뉴스, 「학교전담경찰관 증원 후 학교폭력 개선 '뚜렷', 신고 건수 235% 증가...구속 학생 수는 감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3/06/07/>) 2013.6.7. 검색.

이 필요한 것이다.⁵⁵⁾

4. 전문화된 선발과 교육

경찰청에서는 현재 공채, 특채(전·의경, 경찰행정학, 경찰특공대, 사이버수사요원) 등으로 구분, 채용하고 있는 신임경찰관 채용제도에 대해 청소년 관련 분야 특채모집을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즉 일정한 청소년 관련 학위나 국가자격증, 임상·실무·상담 경력자를 특별 채용하는 제도를 검토해야 하며 그 구체적인 선발을 위한 자격요건과 기준, 절차 등에 대한 상세한 규정이 마련된다면 좋을 것이다. 왜냐하면 경찰청은 2003년부터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이버수사요원을 비정기적으로 특채하여 왔는데 이후 우리나라 경찰의 사이버수사 능력이 국내·외적으로 인정받고 있음을 주지의 사실이다.

기존 경찰관중에서 학교전담경찰관을 선발, 배치할 때에는 청소년 관련 상담사 자격증이나 교원 자격증 소지자 또는 관련 학위 취득자 등 청소년 관련 전문성을 겸비한 사람으로 활달하고 건강하며 대표성이 있는 현직경찰로 정하면 바람직할 것이다.⁵⁶⁾

학교폭력문제에 대응할 활동인력이 향후 확보된다면, 그들이 학교폭력문제를 대처함에 있어서 어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충분한 교육과 훈련으로 학교폭력에 관한 전문성을 배양시켜야 한다.⁵⁷⁾ 예를 들면 경찰교육원에서 학교경찰 관련 직무전문 심화과정을 신설하고 일선 경찰관들에게 각종 학교폭력 관련 자격증 취득을 적극 유도하는 것이다.

이러한 교육은 단기간이 아니라, 선발 직후 최소 1달 이상의 교육과 분기별, 년도별 재교육을 지속적으로 하여 각종 학교폭력관련 정보를 교환하고 현장에서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교육제도를 마련해야 한다.⁵⁸⁾

5. 운영상의 조화

학교경찰은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범죄나 폭력을 예방하고 학생을 지도하는 것이 주요한 임무이다. 학생지도의 경우에는 교사의 권한과 학교경찰의 권한이

55) 청소년폭력예방재단, '2011년 전국 학교폭력 실태조사 연구', 2012. 4. 145면.

56) 김남호, 앞의 논문, 61면.

57) 정성덕, 앞의 논문, 75면.

58) 최종술, 앞의 논문, 2005, 37면.

충돌하거나 중복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교육기관과 학교경찰과의 상호 권한을 조정하고 중재하기 위하여 합의에 기초한 협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⁵⁹⁾

학교폭력에 관한 캐나다의 학교-경찰 협력의 구체적 예로 각 교육청(School board)이 해당 지역의 시(市) 경찰과 맺는 협약(Protocol)이 있다. 이는 일종의 파트너쉽으로 경찰이 학교폭력 현장 및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 교육청과 적극 협력하겠다는 내용이다.⁶⁰⁾

다음으로 학교경찰에게 수사권의 부여 여부에 대해서는 발생사건의 성격에 따라 스쿨폴리스가 직접 수사하는 경우도 필요하다고 본다. 즉, 현재와 같이 학교경찰이 단순한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회부하여 처리하고, 경찰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경찰서에 연계하여 수사진행을 하며, 학교활동을 하면서 스스로 인지한 사건 중 대상 학생에 대한 특별한 사건처리가 요구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필요에 따라 직접 수사할 수도 있어야 할 것이다.⁶¹⁾

VI. 결론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국가적 과제로 떠오른 학교폭력에 대해 안전한 학교를 위한 실질적인 대안으로 떠오른 학교경찰제도에 대해 살펴보았다. 즉 현행 제도상의 현황과 문제점, 외국의 제도를 비교한 후 법률적, 제도적으로 우리나라에 바람직한 학교경찰제도를 고찰해 보았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지역적 특성⁶²⁾과 여러 사회환경적 요인 및 시행중인 제도의 장·단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현실적으로 실천 가능한 학교경찰제도는 무엇일까? 그것은 경찰에서 현재 시행중인 ‘학교전담경찰관’의 확대라고 본다. 왜냐하면 당사자인 청소년, 교사, 학부모들이 학교폭력의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현직 경찰관의 교내 상주를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교폭력으로 인한 국가적·사회적 비용

59) 김남호, 앞의 논문, 65면.

60) ‘토론토시- 교육청간 협약(2011)을 들여다 보면 학교폭력 발생시 학교측의 의무신고사항과 학교장의 재량에 따른 신고사항 및 양자간의 정보교환, 경찰측의 현장조사 절차의무 등에 대해 자세히 명시하고 있다.’
(정문숙, 앞의 논문, 25면)

61) 김남호, 앞의 논문, 63면.

62) 우리나라는 미국처럼 광역화된 도시형태보다는 인구 밀집형을 띠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학교전담경찰관의 확대 배치가 시급한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학교전담경찰관 제도는 현재 과도기의 형태를 띠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우선 경찰서에 주로 근무하면서 필요한 경우 관내 학교를 순회하며 범죄예방교육을 하거나 각종 학교폭력 관련 첨보 수집하는 등 호주 뉴사우스 웨일즈(New South Wales) 주(州)의 청소년연계경찰(YLO)과 유사한 활동을 하고 있다. 사실 진정한 의미의 학교경찰 즉 스쿨폴리스로 거듭나려면 교육청이나 각급 학교에 스쿨폴리스를 위한 사무실을 마련하여 이곳에서 출·퇴근이 우선 이루어져야 한다. 향후 각종 안전활동이나 수당 개선 및 근무감독 등을 위해 스쿨폴리스를 교육청이나 학교에 상주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학교폭력에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학교경찰만을 전담하는 경찰청 및 지방경찰청의 전담부서의 신설과 전문성을 갖춘 인력의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

장기적으로는 외국의 사례와 여러 유형의 학교경찰제도를 철저하게 연구하여 더 전문화되고 정교한 학교경찰제도를 마련한 후 학교폭력이 빈발하는 학교에 대해 시범 실시하고 그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공론화 과정을 거친 후 확대실시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학교경찰제도의 합리적 모델이 정착된다면 스쿨폴리스의 활동성과 학교의 안전성을 동시에 제고할 수 있을 것이고 종국적으로 학교폭력의 예방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더불어 당사자인 학생과 교사 및 학부모들로부터 깊은 신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학교경찰제도를 토대로 안전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하루빨리 확립하여 우리나라가 21세기 일류 복지국가로 나아가 청소년과 학생 등 온 국민들이 평화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논문 및 연구보고서 등

- 경찰청, 경찰백서, 2011
- _____, '배움터 지킴이 업무메뉴얼', 2005.
- _____, '여성청소년 기능 조직개편 및 인력 증원 계획', 경찰청 여성청소년과, 2012.10.
- 경기경찰청 여성청소년계, 한국형 학교경찰제 도입을 위한 방안, 2011.
- 김남호, '한국형 학교경찰제도에 관한 연구', 한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1.
- 김순석, '한국의 학교경찰제 도입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4.
- 김학수,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를 위한 경찰청과 민간의 네트워크 방안', 학교폭력 연구 제1권 제1호, 2011.
- 김형섭,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법제연구 - 경찰의 대응방안과 현법정책을 중심으로 -', 영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3.
- 교육인적자원부, '학교폭력 대처정책 선진국 체험연수 보고서', 2005.
- 관계부처합동,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보고서, 2012.2.6.
- 박윤기, "학교폭력에 대한 경찰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 신순갑, '학교폭력과 스쿨폴리스(School Police)' 오늘의 청소년, 제23권 제2호 통권 217호,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2007.3.
- 이덕난·한지호, '독일의 학교경찰제 도입 사례 및 시사점', 이슈와 논점 제114호, 국회입법조사처, 2009.9.10.
- 오정훈,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경찰활동 방안", 충남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 조인식, '학교폭력 근절 대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가해학생 선도 및 조치를 중심으로', 국회입법조사처, 2012.11.1.
- 정문숙, '학교-경찰의 안전협약과 교내 상근 경찰', 외국교육동향, 한국교육개발원,

2012.

- 정성덕, “학교폭력실태와 경찰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9.
- 청소년폭력예방재단, ‘2011년 전국 학교폭력 실태조사 연구’, 2012.4.
- 최종술, ‘학교경찰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정부학회 2012추계학술대회, 2012.
- _____, ‘미국의 학교-경찰 연계제도 및 한국의 학교폭력 해결책에 주는 시사점’, 한국교육개발원, 2012.6.
- _____, ‘스쿨폴리스(School Police)제도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 스쿨폴리스 토론회(부산지역 시범실시, 현장의 소리를 듣는다) 발제논문, 2005.7.7.

인터넷자료 등

- LA학교경찰 홈페이지 (<http://www.lasdpd.com/>),
뉴사우스 웨일즈 청소년연계경찰 홈페이지
(http://www.police.nsw.gov.au/__data/assets/pdf_file/0007/113839/youth_liaison_officers.pdf/)
- 연합뉴스, 「학교전담경찰관 증원 후 학교폭력 개선 '뚜렷', 신고 건수 235% 증가...
구속 학생 수는 감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3/06/07/>)
- 배움터 지킴이 인터넷 카페 (<http://cafe.daum.net/jikimi>),
중앙일보, ‘현금 안 받는 매점, 뺑 뜯기 원천 봉쇄-영국의 학교폭력방지시스템’.
(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
- 조선일보, “학교에 경찰 常駐해서라도 학교 폭력 잡아달라”, 2013.3.25일자.
- 대구매일신문, ‘경산 학교폭력 '공황상태'…심리 치료 모두 받아야’, 2013.3.25일자.
- 중앙일보, ‘학교에 전담경찰관 뒤 폭력 절반 줄여’, 2013.5.10일자.

[Abstract]

A Study on the Prevention of School Violence – Focusing on a School Police System –

Kim, Hyung-Sup

Doctor of Laws

In March 2013, a high school student in KyeongBuk province committed suicide because of school violence. These circumstances have become issues as a serious social problems in Korea. Although our government and municipalities have established and implemented many measures to root out school violence, they could not have as many effects as expected. Accordingly, it is necessary for the government and all the people to have interests and seek for solutions in an effort to solve the problem.

Recently, police started operating a few systems for direct and effective activities with police officers entering the school sites. It is urgent to prepare measures because school violence can be transferred to a greater national problem if school violence is left out as it were. From the perspective of theses circumstances, the operation of a school police system can be appropriate in terms of time. Accordingly, the satisfactory effects can be possible if the involvement of public authority is enforced under the prudent and thorough planning above all when this system is operated.

Considering these aspects, this essay mutually compared many school police systems appropriate in our country. This essay derives conclusions by mutually comparing the police officer system dedicated to schools which police station is operating police officers in charge of school violence with regard to the introduction model in a Korean way. With regard to these matters, this study is comparatively superior and a reasonable alternative as the introduction model of school police in a Korean way.

Many advanced countries including USA, Germany, England have made assurance doubly sure to prevent school violence and prepare measures for

proper school police system through constant development of relevant programs and active supports at the national level. Several studies have already suggested that school police can be usually used as a very effective tool at this moment. As demonstrated in foreign cases, it is the most critical to develop a unique school police system according to the local historical and cultural differences.

Now, based on more careful and close examinations, both the Government and the society should try to find the best approach to introduction of school police into Korea.